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현정 의원)

의안 번호	187
----------	-----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30일

발 의 자 심현정 의원

찬 성 자 이은미, 남진삼, 김광성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상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시책 수립·시행 의무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 시책 마련 의무에 따른 것으로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스포츠클럽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관련)

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범위
(안 제4조 관련)

다.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안 제5조 관련)

라. 스포츠클럽 회계책임자 지정·운영 및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안 제6조~제7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스포츠클럽 시행령」, 「스포츠클럽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3. 10. 13. ~ 2023. 10. 27.(14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3. 10. 6.~ 2023. 10. 13. 아래표 참고.

조례안(의회안)	검토안(올림픽체육과)	의회의견 - 불수용
	<p>조항 추가</p> <p>제8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u>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받을 시 환수 될 수 있도록 절차 명시)</p>	<p>추가신설제3조(환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제1항제1호사항 임.</p>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평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평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스포츠클럽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80퍼센트 감경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결정·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사.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을 추가 신설하며, 제14조제1항제2호에 “바.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을 추가 신설한다.

【관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을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 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제5항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나.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다. 연령·지역·계층·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라.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3.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스포츠클럽회원의 인권·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심현정의원
연락처	(033) 330 -2500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찬성의원 서명(날인)부

○ 발의 : 심현정 의원

구분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1	평창군의회 의원	이은미	이은미
2	평창군의회 의원	남진삼	남진삼
3	평창군의회 의원	김광성	김광성